

의안번호	2201766
의 퇴 인	정일영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.
추계번호	24C1846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	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에 ‘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’를 추가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 ※(현행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, ② 도로의 교통정리, 주·정차단속의 보조,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, ③ 충효사상,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, ④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, ⑤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,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: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, 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, ⑥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※(현행법 시행령 제18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

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2023년 기준으로 138개 시·군·구가 총 32,100명의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있고, 이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활동비는 지역별로 2~100만원 등으로 상이함
 - 지회장 등 임원을 둘 경우 지역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시·군·구가 추가로 위촉할 지역봉사지도원의 수와 확대될 수당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현재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비가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고 전액 시·도비로 지급하는 지역과 시·군·구비로 지급하는 지역 등 지급 주체도 상이하므로, 현 시점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업무 범위 확대 시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